

-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8. 10.>

(앞쪽)

제 호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성 명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

60mm×90mm[백상지(150g/㎡)]

(색상: 하늘색)

(뒤쪽)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
소 속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5.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 위원장
직인
1.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. 2.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4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